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6. 24(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소통담당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소통담당관	18,000,000	33,635,680	33,635,680	100.00%

2024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세입 예산현액 1,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63만 5천원, 세입결산액은 3,363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소통담당관	3,361,841,000	3,235,871,280	37,900,000	0	88,069,720	2.6%

2024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6,184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2억 3,587만 1천원, 집행잔액은 8,806만 9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2.6%임.

1) 다음연도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307,675,000	293,286,370	255,386,370	37,900,000	
소통 담당관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307,675,000	293,286,370	255,386,370	37,900,000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용역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함

2) 집행잔액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 잔	출 액
소통담당관	3,361,841,000	88,069,720	2.62	0	1,346,000	6,623,000		78,673,720	1,427,000

2024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집행잔액은 8,806만 9천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62%이고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134만 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2만 3천원, 지출잔액
7,867만 3천원, 예산절감액 142만 7천원임.

2. 검토의견

소통담당관의 예산은 대체로 당초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